



2023년 예비군 복무 길라잡이

# 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또 하나의 힘, 예비군



‘일상을 지키는’ 나

‘나라를 지키는’ 나



“ 예비군 복무는  
어떻게 하나요? ”

## 목 차

Table of Contents

### 예비군 복무 소개(웹툰)

04

### 복무 개요

- |                                |    |
|--------------------------------|----|
| Q01. 예비군이 왜 중요한가요?             | 12 |
| Q02. 현역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 13 |
| Q03. 예비군은 어떤 절차로 편성되나요?        | 14 |

### 전시(비상시)

- |                                     |    |
|-------------------------------------|----|
| Q04. 병력동원소집이란 무엇이며 통지서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 15 |
| Q05. 동원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 16 |
| Q06. 예비군동원과 총동원(부분동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 17 |

## 평시

Q07. 예비군은 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나요?	18
Q08.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19
Q09.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1
Q10. 예비군 편의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22
Q11.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어떻게 되나요?	23
Q12. 예비군훈련 불참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4
Q13. 예비군훈련 보류가 무엇인가요?	25
Q14. 예비군훈련의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26
Q15.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분실 시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27

## 기타

Q16. 예비군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28
Q17.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나요?	29
Q18. 군복을 판매하거나 착용해도 되나요?	30
Q19. 비상근예비군은 어떻게 지원하며, 선발되면 어떤 훈련을 받나요?	31



“  
예비군 복무는  
이렇게 합니다!  
”

## 현역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현역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의무는 병의 경우 40세까지,  
간부의 경우 계급별 연령정년까지입니다.  
병은 복무를 마친 후 8년 차까지,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 예비군은 어떤 절차로 편성되나요?

예비군부대는 지역별, 직장별로 편성됩니다.

지역예비군은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직장예비군은 대학교나 국가기관 등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직장방호 임무를 수행하죠.

자신의 부대를 꼭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해야겠죠?



지역예비군  
(시·군·구, 읍·면·동)

직장예비군  
(기업, 대학,  
국가기관 및  
중요시설 등)



## 동원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병무청에서 나전 교부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나 연초 소집부대에서 발송한 지휘서신을 확인한 후 예비군복을 입고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임명하라면 됩니다.

## 예비군은 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나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 예비군 1~4년차는  
동원훈련(2박 3일)이나  
동미참훈련(2박 3일 또는 3박 4일)을 받으며,  
5~6년차는 기본훈련(8시간).  
작계훈련(12시간 : 전반기 6시간,  
후반기 6시간)을 받습니다.

##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동원훈련은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이며  
지역예비군훈련은 지역방위 목적의 훈련으로  
기본훈련, 작계훈련이 있습니다.

### 동원훈련



### 기본·작계훈련



## 예비군 편의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훈련일정 자율선택

인터넷 예비군 누리집에 공지된  
훈련일정을 확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훈련일정으로 선택하는 제도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예비군의 실제 생활권역 내에 있는  
전국의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휴일 예비군훈련

생업활동 보장 등을 위해 휴일에  
본인이 신청한 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비군훈련 불참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정으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훈련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지역예비군훈련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예비군훈련 및 복무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화문의

국방부 : 국번없이 1577-9090

병무청 : 국번없이 1588-9090

누리집

(예비군) [www.yebigun1.mil.kr](http://www.yebigun1.mil.kr)

(병무청) [www.mma.go.kr](http://www.mma.go.kr)

모바일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예비군” 및 “병무청” 검색 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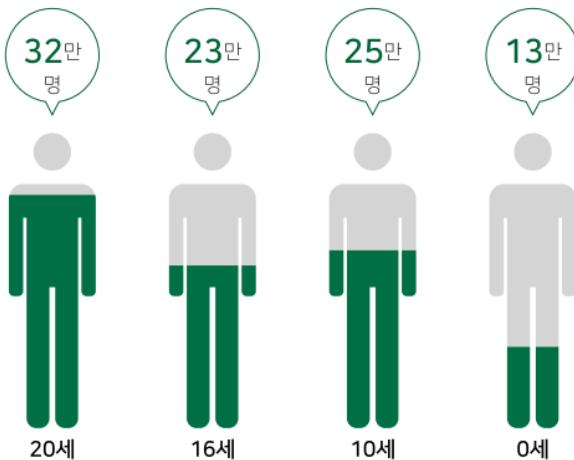
## Q 01 예비군이 왜 중요한가요?

**A**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있어  
예비군에 의한 전력보강이 중요합니다.



[연령별 남성인구] '21년 6월 기준



20년 후에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남성인구가  
현재보다 약 19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성인구 감소는 병역자원 감소로 직결되며 이로 인해 상비군의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상비군의 부족한 전력을 예비군으로 보강해야  
하므로 예비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 Q 02 현역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

**A** 우리나라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6종류로 구분합니다.

\* 대체역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18세	19세		20세	예비군편성	~40세
병역 준비역	병역 판정 검사	1~3급	현역	예비역/복무 마친 보충역 병 : 복무 마친 후 8년 차까지 (이후 추가편성)	~40세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 간부예비군 편성 :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우리나라 남성들의 병역의무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18세에 병역준비역이 되고,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일정기간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역복무를 마칠 때 소속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전역신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이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현역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닙니다. 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전역 후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며, 병역의무는 40세까지입니다.

간부로 전역한 경우에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며, 병역의무 역시 계급별 연령정년까지입니다.

예비군훈련은 병사와 예비역 간부 모두 6년 차까지 부과됩니다. 예비군 훈련 또한 전부 이수하지 못한 경우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계속 훈련의무 부과가 가능합니다.

”



## Q 03 예비군은 어떤 절차로 편성되나요?

“

A

예비군부대는 지역과 직장별로 편성하며 예비군을 관리하고 훈련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장관

지역예비군

행정구역 중심 편성

- 읍·면·동 예비군중대
- 시·군·구 예비군지역대
- 시·군·구 예비군기동대

직장예비군

직장 중심 편성

- 일반 및 대학 직장부대
- 국가기관 직장부대
- 국가중요시설 직장부대

**지역예비군 부대**는 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되어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며 **직장예비군 부대**는 대학교나 국가기관 등 직장 단위로 편성되어 직장방호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변동되면 자동으로 이전된 주소지의 예비군부대로 편성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 Q 04 병력동원소집이란 무엇이며 통지서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

**A**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 작전을 위해 동원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원될 부대를 평시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게 본인이 수신 동의한 이메일, 모바일 앱 (e-병무지갑, 병무청 앱 또는 카카오톡) 또는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교부하는데 통지서는 3가지 종류[**병력동원**, 병력동원(부분동원),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이며 색상에 따라 종류가 다르므로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집통지서 혼동하지 마세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분홍색**) > 동원령 선포 시 사용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흰색**) > 부분동원령 선포 시 사용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파란색**) > 평시 동원훈련 시 사용

No.	(전시 등 유사시를 대비한) <b>병력동원소집 통지서</b>			입영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영 <input type="checkbox"/> 차량수송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계급	병과(주특기)		군번	
입영부대			소집중대	
입영일시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부터 일째 되는 날 시부터 시까지			
모이는 장소				
도착지				
유효기간	위의 입영부대 동원지정 해제 시까지			
병역법 제46조에 따라 위 부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합니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b>직인</b>				

\* 이 통지서는 입영 시 병무 관계관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뒤쪽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Q 05 동원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

A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동원령이 선포되면 예비군들은 병무청에서 사전 교부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나 연초 소집부대에서 발송한 지휘서신을 확인한 후 예비군복을 입고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시면 됩니다.



### [입영일시 계산방법 예시]

구 분	소집통지서 입영일시	예 시	
		동원령(부분동원령) 선포	부대 입영일시
총동원	M + 1일 14:00	3월 1일 10:00부	3월 2일 14:00
부분동원	PM + 20시간		3월 2일 06:00

\* M : Mobilization(총동원),

PM : Partial Mobilization(부분동원)

\* 집결지(모이는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은 소집통지서 참고

#### - 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을 경우,

소집통지서에 동원령 선포일로부터 1일째 되는 날 14시까지로 표기되어 있다면, 3월 2일 14시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해야 합니다.

#### - 부분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을 경우,

소집통지서에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시간부터 20시간 이내까지로 표기되어 있다면, 선포시간부터 20시간이 경과한 3월 2일 06시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해야 합니다.

”



## Q 06 예비군동원과 총동원(부분동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예비군동원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과 중요시설 등을 경비하기 위해 예비군법에 근거하여 지역단위로 예비군을 동원하는 제도이며, 총동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부대 증·창설 및 손실보충 등을 위해 병역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제도입니다.

※ 부분동원 : 국지도발, 전시 초기 등 총동원 이전에 일부 지역에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하는 제도

### [예비군동원]

- **발령권자** : 국방부장관(수임군부대장 위임 가능)
- **대상** : 예비군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 내 모든 예비군(행정구역단위)
- **임무** : 중요시설 병참선 등 방호

### 지역별 집결시간

- 예비군동원 발령지역/인접 시·군·구 : 6시간 이내
- 상기 지역 외의 육상 지역 : 24시간 이내
- 섬 지역에 있거나, 어선 승선자 : 48시간 이내

### [총동원]

- **선포권자** : 대통령
- **대상** : 동원지정예비군(통상 1~4년 차 예비군)
- **임무** : 소집부대로 입영하여 군사작전 수행

### [부분동원]

- **선포권자** : 대통령
- **대상** : 부분동원지정예비군(통상 1~4년 차 예비군, 국지전이나 전쟁초기 긴요부대)
- **임무** : 소집부대로 입영하여 군사작전 수행

”



## Q 07 예비군은 연차별로 어떤 훈련을 받나요?

“

**A**

전역 후 예비군훈련 진행은 개인마다 상이하나 보편적인 훈련진행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군 동원]

연 도	예비군연차	예비군훈련
2023년	0년 차 (전역당해년도)	없음
2024년	1년 차	동원훈련(2박 3일) 또는 동미참(2박 3일 또는 32시간) * 간부예비군 : 6년 차까지 동원훈련
2025년	2년 차	
2026년	3년 차	
2027년	4년 차	
2028년	5년 차	기본훈련(8시간) 작계훈련(12시간 : 6시간 × 2회)
2029년	6년 차	
2030년	7년 차	미이수 훈련
2031년	8년 차	

### [훈련보류자의 경우]

- 학생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1~6년 차까지 매년 기본훈련(동원보충대대훈련) 8시간을 시행하며, 이월된 훈련은 8년 차까지 부과됩니다.
- 기타 보류자의 경우에는 대상별 상이하게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25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 Q 08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

“  
**A**

### 동원훈련

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



#### [훈련대상]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간부 예비군 : 6년 차까지  
병 예비군 : 4년 차까지

#### [동원훈련 진행]

군부대에 입영하여 2박 3일간 실시되며, 훈련장소는 동원지정된 부대의 주둔지나 소속부대의 동원훈련장에서 실시됩니다. 이때 원거리 소집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입영인원수 등을 고려해서 병무청에서 단체수송을 하게 됩니다. 부득이 원거리 소집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이유는 지역별 거주 인원과 군 동원소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경기북부 지역은 소집부대는 많고 거주하고 있는 예비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별 거주 인원의 편차로 인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중 일부를 소집하여 부대단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한번 동원지정된 부대는 전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주소지 이전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통지서를 동시에 수령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또는 직장의 예비군부대나 통지서를 발송한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되, 답변이 제한될 경우 동원훈련에 우선 응소해야 하며, 동원훈련 일자에 국외 체류 중인 사람은 병무청에서 자동으로 동원훈련을 연기처리합니다.

”



## Q 08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은 어떻게 다른가요?(계속)



**A**

### 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에는 지역방위 목적의 기본훈련, 작계훈련, 동미참 훈련이 있습니다.

#### [기본훈련 : 지역방위 작전의 필수 전투기술훈련]

- **대상** : 예비군 5~6년 차 병, 학생예비군,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
- **시간** : 8시간 훈련

#### [작계훈련 : 주소지·직장의 방어훈련]

- **대상** : 병 예비군 5~6년 차
- **시간** : 전·후반기 각 1회(6시간), 총 12시간 훈련

#### [동미참훈련 : 동원훈련 미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 훈련]

- **대상** : 예비군 중에서 동원훈련 미참가자 또는 동원 미지정자
- **시간** : 장교 및 부사관, 공군의 병 : 2박 3일간 입영  
육군 및 해군의 병 : 4일간 출·퇴근(32시간)



## Q 09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예비군훈련 입소시간은 각 군별, 훈련별로 다양합니다.



구 분	입소시간	퇴소시간
동원훈련(2박 3일) 동미참훈련(2박 3일)	육군, 제주도 지역 / 12:00 공군, 해군 / 13:00	17:00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1일)	09:00	18:00
작계훈련	작계훈련 시행부대 통제(6H 기준)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의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 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 이상은 1~2시간 조기 퇴소 가능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9시 입소가 제한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1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 조정 가능

입소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개인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에 입소할 때에는 예비군복과 군화 등 지정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 Q 10 예비군 편의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A**

현재 예비군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는 훈련일정 자율 선택과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휴일 예비군훈련 제도 등이 있습니다.

\*다만 동원훈련,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훈련일정 자율선택]

인터넷 예비군 누리집에 공시된 훈련일정을 확인 후 본인이 원하는 훈련일정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예비군의 실제 생활권역 내에 있는 전국의 모든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휴일 예비군훈련]

예비군 생업활동 보장 등을 위해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비군 누리집 및 앱 활용]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 본인인증 등을 통해 접속하여 예비군훈련에 대한 훈련정보, 훈련일정 확인 및 연기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은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예비군'으로 검색 후 설치



## Q 11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원훈련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관련 규정과 치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비 등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동미참 입영훈련 포함) 참가 시]

- **입소 시** : 입소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 **퇴소 시** : 귀가여비(교통비), 보상비

\*30km 이내, 개별 입영자는 식비 제외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여비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 [지역예비군훈련 참가 시]

- **기본훈련·동미참** : 교통비, 중식비(실비) 지급

\*교통비는 1일 단위로 현금지급되며, 급식은 부대별 여건에 따라 제공됨(도시락 등)

- **작계훈련** : 급식지원

### [예비군 부상자 보상지원]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입·퇴소 포함)에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지원

\*각 군에서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 등 지급여부 결정

- **관련서류 접수 및 보상절차 문의** : 소집부대(훈련부대)

단, 동원훈련 입소 시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절차 문의 : 지방병무청

”



## Q 12 예비군훈련 불참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우편이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 앱으로 받은 후에 입원, 관호상제 등 개인 사정이 발생 하여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전에 훈련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동원훈련 연기신청]

소집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http://www.mma.go.kr)), 병무청앱 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기신청

### [지역예비군훈련 연기신청]

소속 예비군중대에 소집일 전일까지 예비군 누리집([www.yebigun1.mil.kr](http://www.yebigun1.mil.kr)), 또는 소속 예비군중대에 팩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연기신청

동원훈련 및 지역예비군훈련 모두 갑작스런 연기 사유 발생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시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3일 이내 연기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 분	동원훈련	지역예비군훈련
대 상	연기원서 제출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영하지 않은 경우 고발 후, 재소집 또는 동미참 훈련 부과	3차 훈련 무단 불참 시 고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Q 13 예비군훈련 보류가 무엇인가요?

“

**A**

예비군훈련 보류는 국가기능 유지와 사회공익을 위해 경찰관, 대학교 재학생이나 국외 출국자 등 특정한 직업이나 사유가 있는 예비군에게 훈련을 면제 또는 축소시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류대상(예)]

(총56개 직종)

보류대상	훈련시간
대학교 재학생	기본훈련 8시간
국외체류(365일 이상)	국외체류기간 훈련면제
각급학교 교사	기본훈련 8시간
직업훈련원생	기본훈련 8시간

\* '예비군 조직 · 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3, 별표24 참조

**대학교 재학생(사이버·방송통신·학점은행제 등 제외)**은 학업보장을 위해 기본훈련 8시간만 부과하게 되며, **국외에 365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출국기간 중 훈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외 체류기간 중에 부과된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단,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5일(출국일 및 귀국당일 제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에 따른 훈련이 부과됩니다.

**보류직종에 속해 있는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부대에 보류 대상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보류원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휴학·이직 등으로 보류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류해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 Q 14 예비군훈련의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지역예비군훈련 관련사항은 소속된 지역 및 직장예비군 부대로 문의하면 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진행 관련내용은 군 부대로, 통지서나 훈련의 연기 등과 관련된 것은 거주지 소재 지방 병무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구 분	군 또는 예비군부대	지방병무청
동원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진행</li> <li>- 급식 등 복지</li> <li>- 퇴소여비 지급/귀가 수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지서 교부</li> <li>- 민원처리 (연기 등)</li> <li>- 기피자 고발</li> <li>- 입영 수송/입소 여비 지급</li> </ul>
지역예비군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지서 교부</li> <li>- 연기 처리</li> <li>- 불참자 고발</li> <li>- 훈련 진행</li> <li>- 훈련장 시설관리</li> <li>- 입·퇴소 여비 및 중식비</li> </ul>	없음
민원신청	- 국방부 누리집 ( <a href="http://www.mnd.go.kr">www.mnd.go.kr</a> )	- 병무청 누리집 ( <a href="http://www.mma.go.kr">www.mma.go.kr</a> )
전화문의	1577-9090	1588-9090

**”**



## Q 15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분실 시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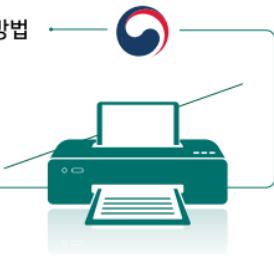
### 동원훈련

동원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소집부대에서 퇴소 시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분실하였을 경우 소집부대 또는 해당 지방병무청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확인 후 「훈련소집 입영확인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본인인증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누리집 출력방법

- 01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http://www.mma.go.kr))
- 02 병무민원포털
- 03 동원·예비군 클릭
- 04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 출력



### 지역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훈련부대에서 퇴소 시 교육훈련 소집 필증을 교부하여 드리고 있으며 분실 또는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소속 예비군 부대로 발급을 요청하면, 확인 후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누리집에서도 로그인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누리집 출력방법

- 01 예비군 누리집 ([www.yebigun1.mil.kr](http://www.yebigun1.mil.kr))
- 02 나의 훈련정보 - 훈련정보 클릭
- 03 훈련내용에서 소집필증 클릭
- 04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필증 출력





## Q 16 예비군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

**A**

군부대, 예비군중대, 병무청에서 예비군 대상으로 전·평시 예비군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b>지휘서신</b> 연초-동원지정 알림, 동원훈련 전-문자 + 이메일 *문자발송 실패 + 이메일 미 확인 시 군사우편 발송
예비군중대	<b>지역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b> 예비군 누리집(모바일 앱), 이메일, 일반우편(창봉투), 팩스, 모바일 송달
병무청	<b>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b> 등기우편, 이메일, 통지서 발송안내 문자

다만 예비군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므로 개인정보 변경 시 관련 기관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수정하기 바랍니다.

**Q**

17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나요?

**“****A**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휴대폰 등 모바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병력동원훈련의 경우**, 병무청 누리집에 접속 후 모바일 통지서 수령에  
동의하시면, 「병무청 앱」, 「카카오톡」, 「e-병무지갑」을 통해 알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예비군훈련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민간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소집통지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바일 소집통지서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22년도 서비스 제공 민간플랫폼 : 네이버, 카카오, 토스, 페이코, 문자메시지  
단, '23년 제공 플랫폼 변경 가능

**”**



## Q 18 군복을 판매하거나 착용해도 되나요?

“

A

군복에는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및 유사군복이 포함되며, 군복을 아무나 판매할 수 있고 착용할 수 있다면 전시에 피아식별이 곤란해지므로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군복의 착용, 판매, 사용 등을 엄격히 통제 및 단속하고 있으며 군부대에서도 구매가 불가합니다.



### [군복 착용 불법사례]

- 예비군훈련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복을 착용하고 활동
- 예비역이 복학 후 군복을 착용하고 학교에서 활동
- 방송에서 군복 임의 착용

### [판매 불법사례]

- 전역 시 휴대한 군복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 예비군훈련 종료 후 군복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 [예비군복 대여제도 안내]

- **대상** : 체형 변화로 복장이 맞지 않아 착용하지 못하는 예비군
- **신청** : 훈련 7일 전까지 「예비군복 대여신청서」 작성 (소속 예비군중대로 제출)  
\* 동원훈련은 소집부대로 문의
- **방법** : 훈련 입·퇴소 시 훈련장에서 대여 및 반납(기존 복장과 교체 대여)

### [국외 반출 불법사례]

- 해외여행 시 코스프레 행사 참여를 위해 군복 휴대
- 군복 관련 처벌은 불법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구매 및 착용 시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 [올바른 불용 군복 처리방법]

- 필요 없게 된 군복이나 전투화는 예비군 동대 등 군부대에 반납하거나 원형을 절단해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훠손한 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기

”



## Q 19 비상근예비군은 어떻게 지원하며, 선발되면 어떤 훈련을 받나요?



**A**

비상근예비군제도는 주요 예비군 직책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아 선발된 예비군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2박 3일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최대 180일) 소집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30일 이내 소집하는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30일 초과 180일 이내 소집하는 장기 비상근예비군으로 구분됩니다.

구 분	단기 비상근예비군	장기 비상근예비군
대상	예비역 병~소·중령	
업무	- 작전계획에 따라 하위 전투제대 현장 지휘, 전투 장비·물자 관리	- 부대 창설계획, 작전계획, 전투 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지속·전문성 업무
성격		- 무기체계 정비 등 전투 장비·물자 관리 업무
복무 기간	- 단기간 복무(연간 30일 이내) * 現 15일 시행	- 장기간 복무(연간 180일 이내)
보상비	-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 평일 · 휴일 15만원

- 비상근예비군은 매년 9월에 모집 공고하여 선발합니다.
- 지원자격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누리집 또는 각 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상근예비군에 선발되면, 연중 충성마트(PX) 이용, 예비군간부 진급 선발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예비군훈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 인터넷 누리집, 모바일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 [전화문의]

국방부 : 국번 없이 1577-9090      병무청 : 국번 없이 1588-9090

#### [예비군 누리집 : [www.yebigun1.mil.kr](http://www.yebigun1.mil.kr)]

##### 1. 지역예비군훈련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나의 훈련정보 / 훈련신청 / 훈련연기 / 보류·해소 및 전화번호 등 안내

#### [병무청 누리집 : [www.mma.go.kr](http://www.mma.go.kr)]

##### 1. 개인별 동원훈련 일정 확인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일자/교통편 조회

##### 2. 동원훈련 관련 안내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모바일 앱]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예비군” 검색 후 설치

##### 지역예비군훈련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

나의 정보/훈련, 훈련신청/연기/보류/해소와 전화번호 등 안내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병무청” 검색 후 설치

동원훈련일 조회/저장 : 나의 병역 일자 조회/저장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조회/저장 : 보관함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조회/저장

※ “e-병무지갑” 앱을 통해 각종 통지서, 통보서, 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